

IFS 국가 정책 제언 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방안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1

다중피해 사기범죄 국내 입법 동향

다중피해 사기 방지 관련 국내 입법안

1. 다중사기방지법안

- '20.8.20. 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 임기 만료 폐기
- 다중사기 개념 및 신상공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 도입

2. 디지털 다중사기방지법안

- '22.8.2.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임기 만료 폐기
-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개념 도입
- 위장수사 및 신상공개 도입
- 피해자 구제 및 통신·금융회사의 의무 등 규정
- 처벌규정 마련

3. 사기방지 기본법안

- '22.8.9. 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 임기 만료 폐기
-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하여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사기 조력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차단 조치 마련
- 사기예방교육 계획 수립

4.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24.2.27. 공포, 8.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조직으로 격상

다중피해 사기 대응을 위한 법 제정 방향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상품권 핀번호 절취형' 전화 금융 사기와 같은 신종 범죄는 다루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재화공급·용역제공 가장 등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이버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포섭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 6831 판결에 의하면 재화공급이나 용역제공과 대가관계가 없으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포섭 가능)
-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통신망 이용형 사기, 영업사기, 다단계판매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기를 목적으로 행하는 다중피해사기 광고 내지 개인 정보의 부정취득 행위, 기망을 통한 자금이탈 행위, 이탈자금의 귀속행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범죄를 아우르는 개념 정의가 필요함
-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은 조직범죄단체 및 중대범죄의 개념에 사기범죄를 포함하고 있음. 최근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기범죄 또한 대부분 조직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특성이 드러나도록 '다중피해 조직사기'라 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다중피해 사기대응 시스템 현황 및 개선 방안

■ 한국형 다중피해 사기방지센터의 벤치마킹 모델

- 대만은 보이스피싱이 최초로 발생한 국가로, 2004년부터 사기대응센터인 '165센터'를 설립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년에 걸친 사기 대응 경험과 기술적·제도적 노하우를 축적해 온 국가임
- 따라서 대만의 사례는 사기범죄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되며, 한국이 다중피해 사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 실질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만과 한국의 다중피해 사기방지 제도 비교

- 대만의 경우 「사기범죄위해방지법」에 따라 금융회사,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결제 사업자 등 민간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사기범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찰 수사 또는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이후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님
- 대만은 '경고계좌' 제도를 통해 반복적인 사기 수취 계좌를 지정하고 통제할 수 있으나, 한국은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음
- 대만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국제로밍 및 선불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이용자가 사기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즉시 정지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그 차단이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지님
- 대만의 인터넷 광고 플랫폼은 사기와 연계된 광고를 식별하고 삭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플랫폼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현행 다중피해 사기방지 제도 관련 개선 방안

- 경찰 수사 혹은 FIU 보고 이후에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시성과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다중피해 사기 대응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므로 실시간 이상 거래 통보 및 자동 동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임
- 대만의 경우와 같이 '경고계좌' 제도를 신설하여 동일 계좌를 통한 반복적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통신서비스 차단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제한적 차단 방식이 아닌, 사기 예방 목적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신 차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업자의 자율적인 책임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는 사기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따라서 잠재적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명령권 및 사기범죄 의심 콘텐츠 삭제 의무화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 대만의 사례는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책임 있는 조치의 이행을 통해 사기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한국의 제도적 기반 위에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이 요구됨

3 다중피해 사기범죄 통합대응 방안

4단계 대응체계(예방-신고-조치-협력) 주요 내용

- (예방) 다중피해 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신고) 다중피해 사기 피해자들이 관련 공공기관 등에 신고
- (조치) 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업체와 유관 기관의 공동 예방·대응책 마련과 법집행기관의 수사 등
- (협력) 국내외 다중피해 사기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민·관 공조
- 다중피해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공공기관만으로는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대응조치와 동일한 민간 합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다중피해 사기통합 대응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유관 협회들(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 등, 경찰청: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및 민간기업(통신·금융·온라인 플랫폼 등)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위험평가 체계 기반 다중피해 사기분석 시스템 구축

- 현대 금융범죄예방(자금세탁방지, 사기방지, 반부패, 반뇌물)을 위한 준법감시 체계는 일반적으로 정책 수립-위험평가 및 교육-점검 프로세스-통제시스템 및 조치-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기반 등의 구축을 의미
-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자들이 얻은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다중피해 사기 통합 대응 기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기관 및 민간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효과적인 추적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과의 협업과 통신 및 금융회사, 온라인 플랫폼 회사 등과의 민간 협업체계 구성이 중요
- 다중피해 사기 통합 대응 기관의 설립과 운영 시 ① 정보 분석 및 공유를 통한 예방활동 중심의 대응원과 영장청구 및 수사를 담당할 검찰, 경찰청 유관부서, 일선 경찰서 간의 효율적 협업을 위한 지배구조 구축 및 운영, ②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보이스 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 및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부처 기관), ③ 통신·금융(예시: 주요 은행)·온라인 플랫폼 업체로부터의 담당 인력 파견과 즉시 조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해외의 성공적인 사기방지센터(대만, 싱가포르) 운영 사례를 볼 때, 통합대응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등 유관 업계에도 사기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구축의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의 발달과 디지털 상품 및 자산의 급격한 발달로 지급 결제의 수단이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피해 사기 통합 대응 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디지털자산 업계의 인력 파견 및 운영 또는 다중피해 사기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 부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한국 다중사기 방지센터(KAFC)의 청사진

사기 차단 시스템의 설계

- 차후 설립될 한국 다중사기 방지센터(KAFC)의 사기 차단 시스템은 다중사기 범죄 발생 이전, 진행 중, 발생 직후의 전 주기에 걸쳐 실시간 대응과 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각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통합 조직인 KAFC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거확보 및 수사 전담 기관의 실질적인 사법 조치로까지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죄 차단 및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사기범죄 차단 및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사기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
제5조	(KAFC 설립) 총리실(또는 대통령실) 산하기관으로 KAFC 설치 근거 명시
제8조	(금융회사 등의 의무) 사기 의심 계좌·카드·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실시간 동결 및 보고 의무
제9조	(통신회사 등의 의무) 사기 의심 문자 발·수신 중단, 번호 서비스 중단 등 피해자 보호 및 정보 제공 의무
제12조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사기 광고·계정 삭제, 신고자 보호 및 정보 제공 의무
제20조	(사기미수 조치)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험 판단 시 차단 가능
제25조	(법적보호) 기관의 신속 조치에 따른 민·형사상 면책 규정 명시

KAFC의 구성

- 통합 신고접수와 위험 분석, 각 기관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발송하는 컨트롤 타워인 중앙통제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함.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폼 사업자, 제3자 결제 사업자 등은 각자의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차단 조치를 수행하며, 검찰청,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FIU), 신용정보사,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행정적, 법적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러한 연계 구조는 실시간 위험 대응과 사후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
- KAFC는 국무총리실 산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기관 간 조정과 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KAFC의 기능 및 운영

- 피해자, 금융기관, 통신사, 플랫폼 운영자 등을 통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KAFC가 정보를 통합 수집 및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하고 AI 기반 위험 분석을 통해 위험 등급 분류 후 고위험으로 분류된 계좌나 통신 정보는 즉시 조치 대상으로 지정
- 이후 KAFC는 금융기관에는 의심 계좌에 대한 동결 요청, 통신사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한 요청,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관련 광고 콘텐츠나 계정에 대한 차단 요청 등 실시간 조치 명령을 발송하고 각 기관은 이를 즉시 이행함
- 궁극적으로 KAFC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접수 기능을 넘어 다중피해 사기범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통합 명령 체계로 기능함
- 사기 미수 상황에서 의심 정황만으로도 선제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예방적 대응’에 최우선 주안점을 둠